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9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8,121,900원 중 3,902,94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가. 원고는 2011. 1. 24. 의료기기, 정밀기계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25. [redacted]단지 내 토지인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읍 [redacted]리 610 공장용지 12,107㎡(이하 토지는 리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취득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redacted]리 [redacted]은 2014. 4. 28. [redacted]리 [redacted] 및 [redacted]리 [redacted]로 분할되었다(이하 [redacted]리 [redacted]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redacted]리 [redacted] 및 [redacted]리 [redacted] 지상에 제2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563.2㎡ 및 제1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공장 326.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redacted] 및 [redacted]은 이 사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되나,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재산세 7,146,870원 및 지방교육세 975,030원, 합계 8,121,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 터파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금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인바, 2015년도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공사가 중단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란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및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5. 25. 분할 전 연제리 610(이 사건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위 토지 중 연제리 610 및 610-1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경 완공된 점, 이후 2014. 4. 28.경 [redacted]은 [redacted]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점, 원고는 2014. 6. 25.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5. 8. 26. 이 사건 토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redacted] 및 [redacted]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 및 원고가 촬영한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공장 신축을 위한 기초 공사가 시공되었음을 확인할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2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